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84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8. 5. 31.
4. 회부일자 : 2018. 6. 11.

II . 제안이유

- 특수학교 신설 추진과 돌봄교실 확충, 미세먼지예방 등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용도가 지정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III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편성규모

(단위:백만원)

추경예산액 (A)	본예산액 (B)	증감(A-B)		추경예산 재원구분	
		금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등)
9,885,510	9,151,267	734,243	8.0%	540,378	193,865

2.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 통 교 부 금	5,049,688	51.1%	4,520,346	529,341	11.7%	529,341	0	0	
	특 별 교 부 금	144,953	1.5%	78,590	66,364	84.4%	0	22,650	43,714	
	국 고 보 조 금	26,161	0.3%	24,757	1,404	5.7%	0	220	1,184	
	특별회계전입금	603,498	6.1%	601,319	2,179	0.4%	2,179	0	0	
	계	5,824,299	58.9%	5,225,012	599,288	11.5%	531,520	22,870	44,898	
자치 단체 이 전 수 입	법 정	시 도 세	1,230,170	12.4%	1,230,170	0	0.0%	0	0	0
		담 배 소 비 세	280,972	2.8%	280,972	0	0.0%	0	0	0
		지 방 교 육 세	1,458,184	14.8%	1,458,184	0	0.0%	0	0	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9,056	0.1%	9,056	0	0.0%	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87,153	0.9%	87,153	0	0.0%	0	0	0
		교육급여보조금	12,000	0.1%	12,000	0	0.0%	0	0	0
		소계	3,077,535	31.1%	3,077,535	0	0.0%	0	0	0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100,828	1.0%	22,743	78,085	343.3%	0	△883	78,968
		기초자치단체	45,481	0.5%	0	45,481	순증	0	1,937	43,544
		소계	146,309	1.5%	22,743	123,566	543.3%	0	1,054	122,512
	계	3,223,845	32.6%	3,100,278	123,566	4.0%	0	1,054	122,512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24,657	0.2%	22,126	2,531	11.4%	0	134	2,397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12,472	1.1%	112,554	△82	△0.1%	△82	0	0	
	행 정 활 동 수 입	5,453	0.1%	5,453	0	0.0%	0	0	0	
	자 산 수 입	26,418	0.3%	26,418	0	0.0%	0	0	0	
	이 자 수 입	4,108	0.0%	4,108	0	0.0%	0	0	0	
	금 융 자 산 수 입	0	0.0%	0	0	0.0%	0	0	0	
	기 타 수 입	15,629	0.2%	15,106	524	3.5%	524	0	0	
	계	164,081	1.7%	163,639	442	0.3%	442	0	0	
지 방 교 육 채		133,440	1.3%	133,440	0	0.0%	0	0	0	
전 년 도 이 월 금		515,188	5.2%	506,772	8,416	1.7%	8,416	0	0	
합 계		9,885,510	100.0%	9,151,267	734,243	8.0%	540,378	24,058	169,807	

3.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인 건 비	공무원인건비	4,522,362	45.7%	4,371,215	151,148	3.5%	151,148	0	0	
	사립학교인건비	1,120,833	11.3%	1,115,193	5,640	0.5%	5,640	0	0	
	인건비 계	5,643,195	57.1%	5,486,408	156,788	2.9%	156,788	0	0	
경 상 비	기관운영비	43,243	0.4%	43,235	8	0.0%	8	0	0	
	학 교 운 영 비	공립	746,756	7.6%	737,763	8,993	1.2%	8,993	0	0
		사립	67,445	0.7%	67,445	0	0.0%	0	0	0
		소계	814,201	8.2%	805,208	8,993	1.1%	8,993	0	0
	경상비 계	857,444	8.7%	848,443	9,001	1.1%	9,001	0	0	
사 업 비	교육사업비	2,110,384	21.3%	1,949,224	161,160	8.3%	23,751	5,395	132,013	
	시 설 사 업 비	학교신증설	210,891	2.1%	161,075	49,816	30.9%	46,269	3,547	0
		일반시설	532,713	5.4%	474,441	58,272	12.3%	13,990	9,563	34,719
		급식시설	89,102	0.9%	77,374	11,728	15.2%	3,879	4,775	3,074
		소계	832,706	8.4%	712,890	119,816	16.8%	64,138	17,885	37,793
사업비 계	2,943,090	29.8%	2,662,114	280,976	10.6%	87,889	23,280	169,807		
지 방 채 및 BTL 상 환	BTL 상환	105,312	1.1%	104,506	805	0.8%	28	777	0	
	지방교육채	325,689	3.3%	39,017	286,672	734.7%	286,672	0	0	
	지방채 및 BTL 계	431,001	4.4%	143,523	287,478	200.3%	286,700	777	0	
예비비 및 기타		10,780	0.1%	10,780	0	0.0%	0	0	0	
합 계		9,885,510	100.0%	9,151,267	734,243	8.0%	540,378	24,058	169,807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84호로 제출되어 201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¹⁾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²⁾ 따라 기정예산 9조 1,512억 6천 7백만원 대비 8.0%에 해당하는 7,342억 4천 3백만원을 증액한 9조 8,855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2018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2017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 목적 지정재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하여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수행에 따른 필요 경비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42억 4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바 이는 최근 4년간(2014~2017년) 추가경정예산의 본예산 대비 평균 증가율 7.9%(6,313억 5천만원)와 비슷한 규모라고 하겠습니다.

1)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2)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다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1억 7천 9백만원, 우선확정 사용분 등 목적지정재원 1,938억 6천 5백만원, 그리고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867억원 등 용도가 지정되어있는 재원과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계약제 교원 및 직원의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 경상적 경비 1,657억 8천 9백만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 가용재원은 857억 1천만원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실질 가용재원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증가분의 11.7%에 불과한바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교육사업과 시설사업간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1) 이전수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 3~13)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의 중앙정부이전수입 5,992억 8천 8백만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 1,235억 6천 6백만원, 기타 이전수입 25억 3천 1백만원 등 총 7,253억 8천 5백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7,342억 4천 3백만원의 98.8%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히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 전체 이전수입의 82.6% 규모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의존재원 위주의 세입구조라는 태생적 한계에 기인한 것인바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전년도 보통교부금 정산, 특별교부금 편성 규모 등에 따라 편성 시기와 규모가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099, 2018.2.28)와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942, 2018.4.4)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5,293억 4천 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 정산분 3,424억 3천 4백만원에 지방채 조기상환분 2,439억 7천 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보통교부금의 실질적인 재원증가 규모는 2,853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교부금은 국가지책수요 93개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25개사업 그리고 재해대책현안수요 2개사업으로 663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모두 목적지정재원이며³⁾, 국고보조금도 SW 교육선도학교운영,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등의 목적지정재원으로 14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회계전입금 21억 7천 9백만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교육부의 2018년도 시도별 유아교육비 산출액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만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하는 특별한 세입재원이라 하겠습니다.

○ 그 밖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이전수입 1,235억 6천 6백만원은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학교미세먼지관리 등을 위한 목적지정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780억 8천 5백만원, 기초자치단체이전수입은 454억 8천 1백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당초 학교환경개선비(기부채납)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및 성적 처리,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동 출제 시도교육청 분담금 등으로 기타이전수입이 25억 3천 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특별교부금과 같은 목적지정재원을 우선확정분과 추경편성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 시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집행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는 우선확정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확정 후 집행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1][비법정전입금 편성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업명	2018 추가경정 예산편성액	비고
1	진로직업교육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특성화고 인재육성	600,000	
2	체육건강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무상급식	64,255,308	
3	체육건강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교미세먼지관리	800,000	
4	교육재정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지원	2,997,752	
5	교육시설안전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꾸미고꿈꾸는학교화장실	5,000,000	
6	교육시설안전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꿈을담은교실만들기	3,500,000	
7	교육시설안전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학교에너지절감프로젝트	△1,960,000	
8	교육시설안전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서울시특별교육지원금	2,562,000	
9	교육시설안전과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안전관리(내진보강)	330,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소계)				78,085,060	
10	중등교육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	669,450	관악·서초 종로구
11	체육건강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무상급식	42,835,770	강남구 외 24개구
12	교육시설안전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교시설복합화(안주초)	720,250	강남구
13	교육시설안전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교시설복합화(신도림고, 개봉초)	57,049	구로구
14	교육시설안전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증축(관악초)	1,160,000	관악구
15	과학전시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마을생태체험과학교실	25,000	구로구
16	노원평생학습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평생학습프로그램공모사업운영	4,500	
17	개포도서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1,720	강남구
18	서대문도서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한도서관한책읽기	2,400	서대문구
19	서대문도서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지원	3,440	서대문구
20	동대문도서관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한도서관한책읽기	1,500	동대문구
기초자치단체전입금(소계)				45,481,079	
총 계				123,566,139	

2)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 15~23)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의 선택적교육수입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의 기숙사 및 급식비의 경우 학생수련 및 시설개방 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이용 예상인원이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 기정예산 보다 1억 7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재교육대상자 확대를 통한 영재교육과정운영 수익자부담금을 기정예산보다 9천 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으로 염리 제3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공유재산(토지)에 대한 조합측 변상금 5억 2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4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⁴⁾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42억 4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1억 7천 9백만원, 사업별 우선확정 사용분 1,698억 7백만원과 예산성립 후 집행할 목적지정지원금 240억 5천 8백만원(BTL 상환 7억 7천 7백만원 포함), 그리고 지방교육채 상환 2,867억원(BTL 상환 2천 8백만원 포함) 중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에 포함된 지방채 조기상환분 2,439억 7천 8백만원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있는 재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1,567억 8천 8백만원과 경상비 90억 1백만원, 목적지정재원을 제외한 사업비 857억 1천만원(누리과정 21억 7천 9백만원 제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에 포함된 지방채 조기상환분을 제외한 지방교육채 상환금 427억 2천 2백만원 등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2,942억 2천 1백만원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의 목적, 시기, 필요성 및 과거 집행실적 등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경상비(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68~75, p111, p315)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567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90억 1백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인건비 증액분을 살펴보면 정규직(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등의 인건비로 1,455억 2천 6백만 원을, 비정규직(계약제교원, 계약제직원)의 경우 보수, 퇴직금·법정부담금, 처우개선비 등으로 56억 2천 2백만을 증액편성하였고,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으로 56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예퇴직을 100% 수용한 전년도 명예퇴직수당과 법정부담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명예퇴직 신청자 전체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집행율은 97.6%로 29억 8천 5백만원이 남았으나 퇴직수당부담금은 집행율 110.94%로 74억 4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⁵⁾ 지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이나⁶⁾ 그 집행에 있어서 동법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더라도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즉 다음 회계년도 본예산 또는 연도말 이

5)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과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69조의4(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6)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부담금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있음.

월액으로 그 부족분 또는 초과분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2017년도 명예퇴직 결산내역]

(단위:백만원, 명)

구분	신청인원	수용인원 (집행인원)	수용률	명퇴수당				퇴직수당부담금				
				예산액 ⁷⁾	집행액	잔액	집행율 (%)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	
교원	공립	912	912	100%	95,019	92,837	2,182	97.70	64,095	71,620	-7,525	111.74
	사립	319	319	100%	26,199	25,710	489	98.13	-	-	-	-
지방공무원		54	54	100%	3,386	3,072	314	90.73	3,386	3,265	121	96.43
계					124,604	121,619	2,985	97.60	67,481	74,865	-7,404	110.94

○ 다만 명예퇴직수당의 경우는 전년도 집행율을 기준으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청은 2018년도 명예퇴직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청자 전원을 수용함으로써 신규교원 임용의 적체를 해소하는 등 인건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공·사립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기정예산 부족분 500억 6천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표3][2018년도 명예퇴직 집행 예정]

(단위:백만원, 명)

구분	신청인원	수용인원 (집행인원)	수용률	명퇴수당				
				본예산	추경예산안	집행액 (2월말)	집행예정 대상 (8월말)	
교원	공립	1,292	1,292	100%	57,070	44,422	87,677 (870명)	422
	사립	385	385	100%	24,664	5,640	20,886 (273명)	112
지방공무원	60	60	100%	3,720	-			

7) 동 예산액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리고 이용액을 합한 금액임.

○ 이와 관련하여 앞의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공립교원의 경우 2월말 명예퇴직수당 집행액은 기정예산 570억 7천만원 보다 306억 7백만 원을 초과 집행하였는바, 이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17.7)에 따라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인건비(보수)에서 부족분을 충당(308억 5백만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 충당분을 교원 보수 항목으로 편성함은 물론 8월말 집행예정 인원 534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전년도의 경우도 ‘예산의 이용’을 통해 공·사립 명예퇴직수당을 2월말 집행에 충당하고 차후 추가경정예산으로 같음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까지 포함하여 29억 8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2월말 집행액이 명예퇴직신청자 1인당 약 1억원 정도이고 8월말 공립교원 명예퇴직신청자가 2월말 집행인원의 49%인 422명임을 감안한다면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의 측면에서 약 430억원 내외로 편성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경상비 중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89억 9천 3백만원은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노사협력담당관-3365호, 2017.12.12), 교육부·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서(전국)(2017.10.31),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서(자체)(2017.12.15)에 따른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목적지정재원을 제외한 일반재원 주요사업별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비 증가액은 기정예산 대비 10.6% 증가한 2,809억 7천 6백만원입니다. 다만 우선확정 등 목적지정사업의 1,930억 8천 7백만원과 누리과정지원 21억 7천 9백만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 가용재원에 따른 사업비는 857억 7천만원이라 하겠습니다.

[표4][사업비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사업비	교육사업비	2,110,384	21.3%	1,949,224	161,160	8.3%	23,751	5,395	132,013	
	시설사업비	학교산증설	210,891	2.1%	161,075	49,816	30.9%	46,269	3,547	0
		일반시설	532,713	5.4%	474,441	58,272	12.3%	13,990	9,563	34,719
		급식시설	89,102	0.9%	77,374	11,728	15.2%	3,879	4,775	3,074
		소계	832,706	8.4%	712,890	119,816	16.8%	64,138	17,885	37,793
	사업비 계	2,943,090	29.8%	2,662,114	280,976	10.6%	87,889	23,280	169,807	

○ 이에 따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비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시설사업비는 857억 7천만원 대비 74.8%인 64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을 제외한 교육사업비는 215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 교육사업비

① 순증 사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목적지정사업과 누리과정지원금을 제외하면 215억 7천 2백만원이며 이 중 학교현장체험학습버스운영, 행복교육박람회, 교육급여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94억 3천만원 순증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표5][교육사업 중 순증 사업비]

(단위:천원)

세세부사업	추경금액	기정예산 금액	증감율	일반재원
학교현장체험학습버스운영(서울시전입금 반납)	25,455	0	순증	25,455
행복교육박람회	106,450	0	순증	106,450
교육급여지원(보조금반납)	1,211,785	0	순증	1,211,785
우리마을역사탐방(서울시전입금)	1,424	0	순증	1,42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납)	7,319,019	0	순증	7,319,019
글로벌문화학교지원(서울시전입금)	10,814	0	순증	10,814
중학교방과후공부방지원(서울시전입금 반납)	72,708	0	순증	72,708
산학일체형도제학교조성(서울시전입금)	19,505	0	순증	19,505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운영(서울시전입금 반납)	2,971	0	순증	2,971
학교평생교육활성화(서울시전입금 반납)	91	0	순증	91
학교흡연예방교육(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33,165	0	순증	333,165
사이버폭력대응거점Wee센터운영(기타지원금 반납)	3,530	0	순증	3,530
학생안전체험시설확충	300,000	0	순증	300,000
초등학교스쿨버스지원(서울시전입금 반납)	23,342	0	순증	23,342
합 계	9,430,259	0		9,430,259

○ 다만 행복교육박람회, 우리마을역사탐방, 글로벌문화학교지원과 학생 안전체험시설확충의 4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출예산 편성의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시전입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반환)금이라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10억 이상 증감액 사업

○ 교육사업비 중 10억 이상 증감액 사업은 누리과정을 제외하면 초등돌봄교실운영에 20억 7천만원,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13억 8천 1백만원, 그리고 학교미세먼지관리에 69억 4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성화고무상교육비지원으로 14억 6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 중 학교미세먼지관리 사업(주요사업 설명자료 p472)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2018 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2018.4.13)을 수립하면서 학교 미세먼지 3개년(2018~2020) 저감대책 지원사업으로

로 2018년에 공립초 1학년 교실 청소비 지원, 실내체육관 청소비 지원, 초등학교 전용 돌봄교실(기존+확충)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유,초,특수학교(일반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렌탈), 중,고등학교 1실이라도 공기정화장치 미설치교에 2대 지원, 초,특수학교 보건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렌탈), 초미세먼지 부적합교 유해성분 분석 및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검증사업을 펼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학교미세먼지관리로 기정예산보다 87억 1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공기정화장치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과 서울시전입금, 그리고 국고와 서울시전입금 반납액을 제외하면 일반재원에 의한 세출 증가분은 69억 4천 5백만원이라 하겠습니다.

-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교육청은 대기오염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바, 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도 이러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기정화장치설치 방식과 관련해서 설치 이후 관리 주체와 유지, 보수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⁸⁾

교육청이 편성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유·초·특수학교와 초·특수학교 보건실은 임대료 지원 방식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중·고등학교 중 일반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는 구입 지원 방식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8) 한국일보, “환경단체,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반대 까닭은”, 2018.4.23.

- 더욱이 동 사업은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임대료 지원 방식이든, 구입 지원 방식이든 공기정화장치의 소모품 교체 등 그 유지관리에 있어 매년 고정적 관리비용(약정기간 후 업체변경, 내용연수에 따른 제품 교체 등)이 발생하는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⁹⁾

특히 지금과 같이 임대료 지원 방식과 구입 지원 방식을 학교급별로 달리하여 지원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 등 교육현장의 혼선만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지원 방식과 구입 지원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검토한 후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45)

- 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으로 ‘학생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5천 4백만원, ‘교실수업연계 체험활동 운영 지원’ 1천 9백만원, ‘농협 주관 농업교육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9천 9백만원 등 총 1억 7천 2백만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학생 및 학부모 인식 개선’ 사업은 학생 및 학부모 인식을 위한 연수지원에 필요한 강사비 등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2018년도 본예산에는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지원 예산으로 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홍보 및 체험·활동형 연수 운영에 이미 5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등 5, 6학년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연수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9) 유·초·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4개월 임대료 지원만 하더라도 21억 8천 6백원인바 3년 약정시 매년 65억 5천 8백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해야함.

특히 기정예산에는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연수 지원비를 별개의 사업으로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교육지원청지원비로는 초등 5,6학년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표6]의 2017년 결산결과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사업비의 불용률이 36.4%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동 사업비의 증액편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6][서울특별시의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단위: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	2017년 결산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1,114	172	217	138	79	36.4%

④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56)

○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56조와¹⁰⁾ 「국가재정법」 제89조는¹¹⁾ 정부예산에 이러한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에 관한 규정일 뿐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10)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1)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현행 법령이 국가재정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방재정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무제한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 이러한 입법취지로 볼 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의 경우는 과연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동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본 운영으로 7천 7백만원,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공모사업의 개인활동 지원을 위해 8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공모사업 개인활동 지원비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¹²⁾

12) 제2조(경비지원) 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7][서울특별시의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교통비 : 3,000원 이내 .급식비 : 5,000원 이내 .활동용품비 등

○ 그러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와 달리 지원금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인활동 지원을 위한 보전금으로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그 산출근거의 객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그 비용을 보전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보전금의 편성이 시급을 다투는 부득이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시설사업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198억 1천 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바, 우선확정 사용분 등 목적지정사업 556억 7천 8백만원을 제외하면 641억 3천 8백만원이 실질 가용재원이라 하겠습니다.

[표8][시설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 재원	목적지정	
								추경	우선확정
학 교 신 증	학교신설	168,055	20.2%	124,063	43,992	35.5%	40,445	3,547	0
	교실증축	42,836	5.1%	37,012	5,824	15.7%	5,824	0	0

설	계	210,891	25.3%	161,075	49,816	30.9%	46,269	3,547	0	
시설 개선	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 개 축	82,788	9.9%	72,575	10,213	14.1%	4,668	4,514	1,031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433,635	52.1%	386,849	46,786	12.1%	8,049	5,049	33,688
		본청시설 관리	130	0.0%	130	0	0.0%	0	0	0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5,483	0.7%	5,483	0	0.0%	0	0	0
		직속기관 시설관리	10,677	1.3%	9,404	1,273	13.5%	1,273	0	0
		소계	532,713	64.0%	474,441	58,272	12.3%	13,990	9,563	34,719
	급식 시설	급식시설 신 증 축	56,821	6.8%	46,655	10,166	21.8%	2,589	4,775	2,802
		급식시설 보수	8,627	1.0%	7,267	1,360	18.7%	1,087	0	272
		조리기구 교체	23,654	2.8%	23,452	202	0.9%	202	0	0
		소계	89,102	10.7%	77,374	11,728	15.2%	3,879	4,775	3,074
	계	621,815	74.7%	551,815	70,000	12.7%	17,869	14,338	37,793	
	합	계	832,706	100.0%	712,890	119,816	16.8%	64,138	17,885	37,793

○ 2015년부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시설사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는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수혜대상 감소 등으로 그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시설개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사업비는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교육시설 노후도 등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인구이동으로 인한 학생분포도 변화에 따라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의 신규수요 역시 유동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시설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공사규모, 시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축소,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낭비와 행정

의 비효율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표9][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	2018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		35.9%	34.9%	38.9%	39.5%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 전체	1,354,863,365	1,757,668,474	1,869,714,337	2,110,383,541
	교육복지사업	1,204,702,752	1,274,337,241	1,253,966,772	1,383,369,176
시설사업비	급식시설	37,186,477	60,529,280	58,657,730	89,102,237
	일반시설	229,775,757	361,421,342	564,297,604	532,712,722
	학교신설	219,144,370	191,180,477	104,165,188	210,891,206
	계	486,106,604	613,131,099	727,120,522	832,706,165

○ 따라서 [붙임]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설사업비 증 물량을 축소하거나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등은 당초 사업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통한 실수요 예측 등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지방채원리금 상환(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506~508)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원리금상환 2,866억 7천 2백만원은 2015년 교원명예퇴직과 학교신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중 교원명예퇴직 원금 전액과 학교신설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자 편성한 2,904억 6백만원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한 교원명예퇴직과 학교신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차액보전분 등에 대한 이자상환 감액분 37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 이 중 이자상환 감액분 37억 3천 4백만원은 기정예산에서 2015년 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과 2016년 교육환경개선을 제외한(고정이율) 나머지 채무에 대해 모두 3.5% 이율로 이자상환금을 계산하여 편성하

였던 것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표10]에서와 같이 2.56%~2.88%로 금리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그 차액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원금상환 증액분 2,904억 6백만원은 2015년 발행한 교원명예퇴직분 2,561억 7천 5백만원과 같은 해 발행한 학교신설분 1,524억 1천만원 중 일부인 342억 3천 1백만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채무상환재원은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942, 2018.4.4)에 따른 지방채 조기상환분 2,439억 7천 8백만원에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099, 2018.2.28)에 따른 지방채상환분과 앞서 살펴본 이자상환 감액분의 합인 464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교육부가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942, 2018.4.4)와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통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099, 2018.2.28)에서 모두 2015년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조기상환을 고이율 순으로 상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교육청 채무가 모두 국가부담 지방채라는 점에서 그 상환재원을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2014년 09공자금 인수 지방채 차환과 같이 2015년 발행 지방채보다 고이율(2.99%)채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 결국 지방채조기상환이 교육청의 자율적인 채무감소를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상환방침 등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적 운용을 저해할 소지가 있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율적 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이러한 획일적 채무상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0][2018년도 지방채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발행일 (예정일)	차입처/차입조건	'18년이율 (변동)	발행액	2017년말 채무잔액	2018년말 채무잔액
2014 학교신설 등	2014.09.19.	NH농협은행/ 5년거치10년균등 상환	2.56	59,514	59,514	59,514
09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차환	2014.12.24.		2.99	182,629	106,209	106,209
교원명예퇴직 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015.03.26.		2.94	256,175	256,175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	2015.11.20.		2.267 (고정)	268,763	268,763	268,763
교부금차액보전 (누리과정)	2015.12.24.		2.87	137,722	61,974	61,974
2015 학교신설	2015.12.29.		2.88	152,410	152,410	118,178
교부금차액보전	2016.12.30.		2.88	152,638	152,638	152,638
2016 학교신설	2016.12.30.		2.88	51,013	51,013	51,013
교육환경개선	2016.11.23.		1.58 (고정)	217,414	217,414	217,414
교육환경개선	2018.12월					133,440
합 계				1,478,278	1,326,110	1,169,143

-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사업비 감액 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학교명	급별	설립별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사업내역	감액	편성(증감) 사유
영등포구	문래초	초	공립	학교시설증개축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1,192,967	도시계획용역 추진으로 연도내 시설공사 계약불가
영등포구	문래초	초	공립	학교시설증개축	강당겸체육관	신재생에너지	-226,632	도시계획용역 추진으로 연도내 시설공사 계약불가
서초구	이수초	초	공립	학교시설증개축	강당겸체육관	설계비	-70,000	우선순위미대상 공유재산심의보류
송파구	아주중	중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전면)	본관화장실개선	-352,000	2017년 외벽개선 사업비 등으로 해소
강서구	신정여상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전면)	정보관 화장실 전면개선	-210,710	2017년 제2회 추경으로 해소
은평구	은평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부분)	화장실변기교체	-50,000	증액사업, 학교예산으로 해소
강동구	명덕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부분)	본관동 화장실 개선	-144,000	사업변경희망 학교장의 전면개선 요청으로 취소
양천구	월촌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부분)	화장실 개선	-47,94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성동구	성원중	중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부분)	정보관동 2~4층 화장실 개선	-109,230	학교의 전면보수 요구로 집행불가능
구로구	신미림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변압기용량증설	-200,000	2017년 제2회 추경 냉난방개선으로 해소
중구	리라아트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교사동 컨벤션룸(시청각실) 개선	-47,000	학과개편으로 사업필요성 해소
성동구	무학여고	고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방송장비 교체	-180,000	증액사업 원가통계목변경희망
성북구	동신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방송실 시설 및 장비보수	-50,000	증액사업, 2017년 특재로 기지원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75실, 재정지원액)	-77,064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75실, 운영비 선공제액)	-4,739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601실, 재정지원 잔여액)	-19,676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601실, 운영비 선공제액)	-4,939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200실, 재정지원액)	-160,880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200실, 운영비 선공제액)	-11,088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763실, 재정지원액)	-122,611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763실, 운영비 선공제액)	-7,249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468실, 재정지원액)	-71,874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468실, 운영비 선공제액)	-5,093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51실, 재정지원액)	-63,775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51실, 운영비 선공제액)	-2,958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97실, 재정지원액)	-86,885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97실, 운영비 선공제액)	-7,271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82실, 재정지원 잔여액)	-24,887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82실, 운영비 선공제액)	-3,967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393실, 재정지원 잔여액)	-45,996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393실, 운영비 선공제액)	-11,546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695실, 재정지원액)	-77,299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695실, 운영비 선공제액)	-4,819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684실, 재정지원 잔여액)	-44,286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684실, 운영비 선공제액)	-9,513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2,563실, 재정지원액)	-7,777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2,563실, 운영비 선공제액)	-361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513실, 재정지원액)	-80,649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513실, 운영비 선공제액)	-4,345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723실, 재정지원 잔여액)	-22,754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723실, 운영비 선공제액)	-3,627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644실, 재정지원 잔여액)	-74,871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644실, 운영비 선공제액)	-18,800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2,006실, 재정지원액)	-180,210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2,006실, 운영비 선공제액)	-9,351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835실, 재정지원액)	-61,862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835실, 운영비 선공제액)	-3,285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866실, 재정지원액)	-120,804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866실, 운영비 선공제액)	-9,281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87실, 재정지원액)	-23,509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387실, 운영비 선공제액)	-1,967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27실, 재정지원액)	-6,900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27실, 운영비 선공제액)	-577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543실, 재정지원액)	-14,223	물량 축소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1,543실, 운영비 선공제액)	-757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777실, 재정지원액)	-75,641	물량 축소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기시설개선	2018년 LED조명기구 임차비(777실, 운영비 선공제액)	-6,325	물량 축소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고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냉난방개선	돈의관 냉방 개선사업	-250,000	물량축소 실태조사시물량과다산정 학교 예산으로 해소
은평구	은평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벽개선	본관동 외벽개선(미장)	-132,000	증액사업 학교명변경희망
서대문구	한성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벽개선	기념관 외벽보수	-310,000	증액사업 학교명변경희망
은평구	신진과학기술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벽개선	도서관동 치장벽돌 외벽개선	-160,800	부분보수(31,200)으로 조정
노원구	인덕공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벽개선	본관동 후면 외벽 보수	-150,000	증액사업 사업명변경희망
송파구	정신여중	중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벽개선	교사동 외벽개선	-96,000	증액사업,감사지적(경고) 정신여고사업으로대체

광진구	동대부여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소방시설개선	노후 소방배관 교체	-20,000	증액사업 학교명증액오류(동대부고임) 동대부고소방시설개선은특재로해소
중랑구	송곡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방수공사	별관 옥상방수	-46,800	학교 예산으로 해소
은평구	연서중	중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방수공사	정보관 옥상 방수개선	-65,520	구청 보조금으로 해소
은평구	예일여중	중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방수공사	별관 옥상방수	-46,800	증액사업과 중복편성
구로구	개웅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방수공사	옥상가설구조물방수	-37,440	학교 예산으로 해소
은평구	총암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바닥개선	본관 바닥개선	-378,000	2017년 본예산과 중복(378,000)
강동구	명일여고	고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바닥개선	본관동 바닥 개선	-422,070	개선물량 일부 변경(감소)
마포구	성서중	중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도장공사	우리학교고운색입히기-교 사외부	-40,471	향후 외벽개선과 병행 추진
송파구	방이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도장공사	도장(외부) 공사	-69,700	2017. 9월 특재로 해소
강북구	송중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교사동 내부 포장	-66,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강동구	주몽학교	특수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교사주변 배수로 교체(흙관)	-104,750	학교 예산으로 해소
중랑구	상봉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교실및복도창문방충망설치	-20,000	증액사업 동부포괄사업비로 기 완료
마포구	아현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시청각실 리모델링	-83,800	구청 재원으로 해소
서대문구	연희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창고개축	-218,120	학교 예산으로 해소
은평구	상신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전봇대 이설 및 전기선 인입시설 설치	-35,000	증액사업,구청보조금으로기해소, 사업변경희망
마포구	염리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실과실 환경개선	-3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은평구	증산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교실환경개선	-5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금천구	독산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실과실환경개선	-30,000	증액사업,금천구청보조금으로해소 사업변경희망
영등포구	대방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농구부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50,000	증액사업(2명),중복편성 사업변경희망
금천구	안천중	중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당직실 리모델링	-20,000	증액사업,학교예산으로해소 사업변경희망
영등포구	선유고	고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교실구조 개선공사	-5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노원구	동산정산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축구부 휴게실 및 훈련장 보수	-5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노원구	녹천중	중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특별활동교실 조성 추가공사비	-60,000	증액사업 2017년특재로해소
노원구	월계고	고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교무실 싱크대 및 비품저장실 방수	-1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종로구	경신중	중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축대 절개지 암반 보수	-150,000	2017년 제2회 추경으로 해소
중구	환일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사면 및 석축 보강	-46,250	2017년 제2회 추경으로 해소
중구	한양중	중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70,000	증액사업,감사지적(경고) 흥인초사업으로대체
송파구	신천중	중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특별교실 환경개선	-2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송파구	정신여중	중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교실환경개선	-150,000	증액사업,감사지적(경고) 정신여고사업으로대체
동작구	사당중	중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복도 세면대 보수	-2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강북구	서울효정학 교	특수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학교시설공사(보일러공사)	-10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동작구	성남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관리실 환경개선	-10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강북구	수유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방충망 설치	-20,000	증액사업(2명),중복편성 사업변경희망
성북구	성북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놀이시설 바닥 개선	-11,000	포괄사업비로 11,000천원 기지원
강북구	인수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사업	도서관 및 컴퓨터실 리모델링	-50,000	증액사업 사업변경희망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내진보강)	내진보강공사 감리비	-1,090,000	공사집행방법변경 감리를설계에포함하여집행
동대문구	용두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본관동,서관동 석면제거공사	-167,700	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 취소
중랑구	동원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정보센터 석면제거공사	-117,600	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 취소
중랑구	원목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교사동부분 석면제거공사	-178,500	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 취소
동대문구	홍파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석면제거공사	-1,074,450	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 취소
용산구	금양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후관동 석면제거공사	-478,450	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 취소
용산구	삼광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본관동 석면제거공사	-224,100	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 취소
용산구	한남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정보화동 석면제거공사	-75,850	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 취소
종로구	청운초	초	공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교사동 석면제거공사	-565,500	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 취소
서대문구	정원여중	중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석면 해체 제거작업	-102,400	사업 완료로 취소

동작구	승의여고	고	사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안전관리(석면제거)	석면 해체 제거작업	-689,000	학교 요구로 인한 사업 취소
동대문구	청량중	중	공립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급식시설개보수	노후시설전기공사, 온수기설치,가스배관공사및 급식실환경개선공사	-184,540	사업취소 요청, 전면보수 희망
송파구	가주초	초	공립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급식시설개보수	온수탱크교체외2종	-10,780	급식시설 증축계획으로 취소
강동구	묘곡초	초	공립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급식시설개보수	냉난방기확충	-10,678	급식시설 증축예산 반영으로 취소
송파구	오주중	중	공립	학교급식환경개선	노후급식시설개보수	바닥밋트렌치교체	-23,144	급식시설 증축 희망(학교장)으로 취소